



영업비밀 부정사용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금지청구 관련 항소심 사건

44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사건 번호	평성20년(네) 제245호
판결 일자	2008. 7. 18.	판결 결과	일부 유지, 일부 변경
원고 (항소인)	유타카엣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산모토, 2. B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 8호, 3조 1항, 2항, 4조		
영업 비밀	영업정보(상품의 판매처 업체명, 수량, 가격, 이익액 등)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비밀유지의무, 채무불이행책임		

02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주머니 제조 도매업계의 회사이다.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거래처를 경쟁사에 소개하는 등 강한 사해적 의도를 가지고 거래처 탈취를 계획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 B는 퇴사 후 2006년 2월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해 4~5월 무렵부터 원고의 거래처인 아사히 플라스틱에 원고의 상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설정한 유사 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의 상품번호 근처에 원고의 상품번호를 기입하여 비교하기 쉽게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 회사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개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악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상품의 제조 판매 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본 사안은 원고의 항소에 대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항소인)



피 고 (피항소인)

피고가 비밀유지서약을 작성한 점, 원고의 비밀사항이 본건 영업정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영업정보가 비밀로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본건 영업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이다.

피고에 의한 본건 영업정보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피고들은 탈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고와 유사한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 등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 B가 체결한 서약서에는 본건 영업정보를 비밀사항으로 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영업비밀로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원고가 이를 비밀로 유지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에 비밀로서 유용성이 없다.

04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 B를 영업담당직원으로 채용하고 오사카 영업소장의 직책을 주고 중국에 출장을 보냈으며, 원고와 이전부터 거래가 있던 공장과의 거래를 담당하게 했다.

원고는 2004년 9월경 중국 공장에서 피고 B가 원고의 다른 직원과 함께 원고의 경쟁업체를 설립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B에게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건 비밀유지 서약서에 날인을 요구했으며 B는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본건 서약서의 내용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서명 날인했다.

서약서에는 “①회사가 추진하는 업무는 독자성을 띤 것이 많아 외부 기밀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누설하거나 경쟁사에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② 만일, 의사소통과 어떠한 형태로든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당사의 비밀사항은 누설하지 않습니다. 또한 독립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당사에 영향이 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동의 없이 우리의 공급 업체 및 고객과의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B는 서약서 작성 후에도 원고의 경쟁사와 접촉했다. 또한 B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 회사는 B가 본건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영업정보를 공개 또는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이에 상당한 손해액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 만일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채무 불이행 및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판매기간 1년간의 이익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의 상품에 대해 포괄적 제조금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는 일부 한도에서만 인정될 뿐이므로 제조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상당이라 할 수 있고, 본건 영업비밀인 판매가격정보를 사용한 제조판매는 이후 다시 손해배상청구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원심을 일부 변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32만 4048엔을 배상해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05 Key Point

어떠한 대상이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